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9일 17시 22분



목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해명자료 | 3 |
| 해양공원에서의 포장마차 주류판매, 조리행위 위법 주장 관련 | 3 |

보도자료

해명자료

해양공원에서의 포장마차 주류판매, 조리행위 위법 주장 관련

2016.12.21 조회수 733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형민 연락처 061-659-3408

"해양공원에서 포장마차가 주류판매를 하거나 조리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"는 주장에 대해 ⇒ 억지 주장

⇒ 낭만포차 개장 1년 전인 2015. 4월부터 포차 운영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이행 등 수 차례 관계자 회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

⇒ 시 소유인 인도의 일부 구간(391.4m)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, 식품위생영업신고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등 관련법에 의거

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

⇒ 낭만포차 운영 관련 일부운영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, 앞으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잘 수렴하여 관리에

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목록

이전글

관광진흥기금 사업 관련 의회 의결절차 관련

다음글

시티파크 골프장의 100억 원 기부약정 관련

Yeosu Web Contents

